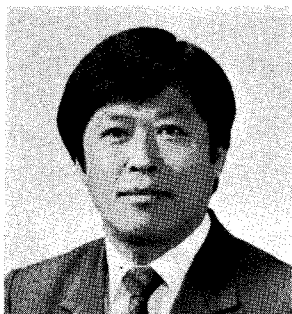


日本の 特許管理 教育考察(6)



安鍾喆
〈特許廳 指導課 事務官〉

目 次

I-1 工業所有權制度의 基礎知識

工業所有權制度(特許制度)의 目的

1. 特許制度의 基礎知識
2. 實用新案制度의 基礎知識
3. 意匠制度의 基礎知識
4. 商標制度의 基礎知識
5. 特許權等の 保護 對象
6. 特許廳에 있어서의 審査節次
7. 審判制度의 基礎知識
8. 權利의 發生에서 消滅까지
9. 特許權者의 義務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査節次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있어서 早期審理의 節次等
12. 法改正 動向

I-2 國際出願의 活用

1. PCT의 概要
 2. PCT의 意義
 3. PCT 締約國一覽
 4. 在來절차와 PCT절차와의 比較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6. FAX를 利用한 國際出願의 提出
 7. 國際出願關係手数料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査節次

1) 早期審査의 對象

早期審査의 對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條件이 要求된다.

- (1) 審査請求되어 있는 出願
- (2) 實施關聯 出願

出願人(또는 實施許諾을 받은 者)이 그 發明을 實施(特許法 第2條의 生産, 使用, 讓渡 및 日本으로의 輸入等)하고 있는 出願

- (3) 審査가 行해지고 있지 아니한 出願
- 2) 早期審査節次

(1) 「早期審査에 관한 事情說明書」(書式1 參照) 1通을 特許廳窓口(出願第2課)에 提出하거나 또는 봉투에 「早期審査에 관한 事情說明書 在中」으로 表示하여 特許廳長官앞으로 우송한다.(手數料는 無料)

(註) ① 特許廳에서는 早期審査에 불일 것인가에 대한 선정을 行하며 申請한 것중에도 早期審査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早期審査의 開始에 대한 通知는 없다.

(2) 作成要領

「早期審査에 관한 事情說明書」의 ※부분을 中心으로 간결하게 說明하면 된다.

※6. 實施狀況說明

(1) 實施關聯行爲의 特定:(例)生産

(2) 發明·考案의 實施時期:(例)“昭和○年○月부터 生産中(予定)”

(3) 發明·考案과 實施關聯行爲와의 關係: 例를 들어 製品의 어떤 부분에 그 發明의 技術이 적용되고 있는 가를 記載한다.

※7. 先行技術調査 및 對比說明

(1) 調査結果:적어도 昭和46年~出願日까지의 公開公報(公表公報를 包含)를 對象으로 先行技術의 調査를 한 公報名을 記載한다.

(例) i) 特開昭52-○○○號 公報

ii) 實開昭53-○○號 公報

(註) 先行技術調査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社)發明協會 都道府縣支部 또는 (財)日本特許情報機構(JAPIO)에 申請하면 된다.

(20日 정도면 調査가 可能하다.)

(2) 對比說明:이 出願發明과 先行技術公報의 內容을 比較하여

① 兩者의 차이

② 이 發明의 우수한 點(效果를 包含)을 意見書를 作成하는 要領으로 具體的이면서 간결하게 記載한다.

(3) 其他:中小企業(또는 個人)인 경우 반드시 省略事項(「特定の 刊行物」의 調査, 先行技術文獻의 카피)를 記載함과 아울러 業種, 從事員數 또는 資本金을 記載하여야 한다.

(例) ① 先行技術文獻의 카피는 省略한다.

② 自社は 鑛工業種으로 從業員數는 150人

이다.

(參考) 中小企業基本法에 定하는 中小企業의 基準

| 業種 | 從業員數 | 資本金 |
|--------|--------|----------|
| 鑛工業 | 300人以下 | 1億円以下 |
| 都賣業 | 100人以下 | 3000万円以下 |
| 小賣서비스業 | 50人以下 | 1000万円以下 |

〈書式1〉 早期審査에 관한 事情說明書

早期審査に關する事情說明書
昭和 年 月 日

特許廳長官 殿

1. 事件の表示
2. 發明·考案の名稱及び公開分類 ()
3. 出願審査の請求の有無
4. 提出者(出願人)
住所(居所)
電話
氏名(名稱) 印
5. 代理人
住所(居所)
電話
氏名(名稱) 印

※6. 實施狀況說明

- (1) 實施關連行爲の特定
- (2) 發明·考案の實施時期
- (3) 發明·考案と實施關聯行爲との關係

※7. 先行技術調査及び對比說明

- (1) 調査結果
- (2) 對比說明
- (3) その他

8. 添付書類の目録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對해서의 早期審理節次 等

1) 早期審理의 對象

早期審理의 對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條件이 要求된다.

(1) 審判請求人(實施許諾을 받은 者)이

① 그 發明을 實施(生産, 使用, 讓渡, 日本으로의 輸入等)하고 있으며

② 權利化에 對해서 긴급성을 要하는(다음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것) 出願

i) 審査에서 異議申請이 있고

ii) 第三者(例를 들어 侵害者)가 許諾을

받지 않고 그 發明을 實施하거나 또는 實施를 위한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

- (2) 拒絕査定 不服審判事件인 出願
- (3) 審理가 開示되지 아니한 出願

2) 早期審理節次

(1)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書式2 參照) 1通을 特許廳窓口(審判部書記課)에 提出하거나 또는 봉투에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 在中」이라고 表示하여 特許廳長官에게 우송한다.

(註) ① 特許廳에서는 早期審査에 붙일 것인가에 대한 선정을 行하며 申請한 것 中에도 早期審理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早期審理의 開始에 대한 通知는 없다.

(2) 作成要領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의 ※부분을 中心으로 간결하게 說明하면 된다.

※5. 實施狀況說明

(1) 實施關聯行爲의 特定:(例) 生産

(2) 發明·考案의 實施期間:(例) “昭和 〇年〇月부터 生産中(予定)”

(3) 發明·考案과 實施關聯行爲와의 關係: 例를 들어 製品의 어떤 部分에 그 發明의 技術이 適用되고 있는 가를 記載한다.

※6.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의 說明

(例1) 이 發明은 審査에서 特許異議 申請人 〇〇會社가 申請한 理由에 근거해서 拒絕되었음.

(例2) 〇〇會社は 當社의 發明에 기초한 〇〇製品을 임의로 昭和〇〇年 以來 製造, 販賣하고 있음.

(〇〇製品의 카타로그 또는 경고장의 寫本을 첨부함)

※7. 明細書記載의 完備에 關한 主張等

(1) 明細書記載의 完備에 關한 主張

① 發明의 目的

(例) i) 이 發明의 「産業上의 利用分野는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〇〇〇〇〇〇〇한것에 있음

ii) 이 發明의 「從來의 技術」은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〇〇〇의 問題點을 갖고 있음.

iii) 이 發明의 「發明의 解決하고자 하는 課題」는, 〇〇〇〇하는 것에 의해 〇〇〇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

② 發明의 構成

(例) i) 이 發明의 「課題를 解決하기 위한 手段」은,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〇〇〇에 있으며 그 「作用」은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〇〇〇한 것에 있음.

ii) 이 경우 〇〇〇 및 〇〇〇의 範圍에 대해서는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 및 第〇表에 記載한 「實施例」 및 參考例에 定한 것에 있음.

③ 發明의 效果

이 發明의 效果는 明細書 第〇面〇行에서 第〇面〇行까지에 記載되어 있으며 다음과

〈書式2〉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

| | |
|------------------------|-------------------------------------|
| 早期審理に關する事情說明書 | |
| 昭和 年 月 日 | |
| 特許廳長官 | 殿 |
| 1. 事件の表示 | 昭和 年 審判第 號 特·實 願昭 號(特·實 開道 號) |
| 2. 發明·考案의 名稱及び公開分類 | () |
| 3. 提出者(審判請求人) | |
| 住所(居所) | |
| | 電話 |
| 氏名(名稱) | 印 |
| 4. 代理人 | |
| 住所(居所) | |
| | 電話 |
| 氏名(名稱) | 印 |
| ※5. 實施狀況說明 | |
| (1) 實施關連行爲의 特定 | |
| (2) 發明·考案의 實施時期 | |
| (3) 發明·考案と實施關聯行爲との關係 | |
| ※6.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의 說明 | |
| ※7. 明細書記載의 完備에 關する 主張等 | |
| (1) 明細書記載의 完備에 關する 主張 | |
| (2) 拒絕理由に該當しないとする主張 | |
| 8. 添付書類의 目錄 | |

같다.

(例) i) ○○는 不要하며 ○○만으로 충분하다.

ii) ○○에 있으며 ○○를 위해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特許請求範圍의 記載

特許請求範圍의 各構成要素에 대해서는 明細書에 다음과 같이 說明되어 있음.

(例) i) ○○○○한 點은 明細書 第○面○行에서 第○面○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에 있음.

ii) △△△△한 點은 明細書 第○面○行에서 第○面○行까지에 記載한 바와 같이 △△△△△에 있음.

(2) 拒絕理由에 該當하지 아니한다는 理由

- ① 發明의 目的에 대해서
- ② 發明의 構成에 대해서
- ③ 發明의 效果에 대해서
- ④ 特許請求範圍의 記載에 대해서

(계속)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 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아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幹援 旋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企業과 發明家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디어뱅크개설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 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써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對 象: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 申請方法: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 接 受 處: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발명진흥부 (TEL: 568-8263)
-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幹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